

소송절차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 (2) 이러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쟁점이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에서 하는 사건심리는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관련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서 같이 신문하는 등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되도록 1~2회의 기일에 종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2.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제출

(1) 답변서 제출

- ①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②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2) 준비서면 제출

- ① 법원은, 한 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하게 됩니다.
- ②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관하여 종전에 제출한 내용 이외에 더 이상 반박할 사항

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그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반박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3. 증거의 사전·일괄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서증 :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 제출
 - ② 증인 신청 : 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 ③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 입증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 제출
- (2) 증거설명서 및 증인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scourt.go.kr ⇒ 알기 쉬운 소송 ⇒ 증거신청]

4. 기타 유의사항

-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분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 (3) 소송대리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 이하인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당사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4)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도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